

고맙습니다. 호국영웅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14호) 공포 알림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총리령 제1814호, '22.7.12.)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가공 후 밀봉 포장한 축산물(가공·포장 등)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축산물 영업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작업 허용
 - 밀봉된 축산물·식품의 경우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 *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 밀봉 식품(유산균음료, 어류·조개류 등)도 가능하도록 개선
 - 축산물 가공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시 기준·절차 명확화
 - *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에서 채수, 수질검사 부적합 시 가공 등에 사용중지 등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가품질검사(분쇄포장육에 한함)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검사실 및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의무화
2. 동 개정령은 2022년 7월 12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14호).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중앙부처(법령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장), 시·도 축산물 관련 부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관련 단체,

주무관 남경우 사무관 김충현 축산물안전정책 전결 2022. 7. 12.
과장 김철희

협조자

시행 축산물안전정책과-4860 (2022. 7. 1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축산물안전정책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247 팩스번호 043-719-3270 / nkw98@korea.kr / 대한민국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